

제280회 강서구의의회 제1차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6. 15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6월 15일
전문위원 서 선 옥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60
- 나. 제 출 자: 강선영 의원 외 5명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5월 26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6월 2일

2. 개정이유

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」 중 조례의 제명과 별지서식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
- 나. 지원제외 대상을 신설하고 중복지원자 및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2항에 따른 불필요한 대상자 지원 제외 (안 제4조)
- 다. 단서조항을 법제 형식에 맞게 수정 함 (안 제5조)
- 라. 별지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을 추가함 (별지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
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해당부서: 어르신복지과
- 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1. 5. 27. ~ 6. 1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별지서식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개정내용은
 - 먼저 제명을 기존의 “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”에서 “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”로 개정하였고,
 - 별지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서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경제상태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동의란을 추가하였으며,
 - 그 밖에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지원제외 대상자에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자를 추가하였고,
 - 안 제5조(기존 제4조)의 1인 1대 지원의 예외사항인 단서조항을 법제서식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.

- 성인용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사용되는 복지용구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9조 및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하나임.
 -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판정을 받은 자 중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차상위 계층
 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
 - 복지용구 관련 고시에서 해당 명칭을 ‘성인용 보행기’로 하고 있고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조례 각 조항에서도 ‘성인용 보행기’로 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명 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6조(기존 제5조)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시 신청자의 인적 사항, 경제상태(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), 중복지원 여부 등을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,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위해서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별지의 신청서식에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를 위한 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.

- 그 밖에 안 제4조는 중복지원 및 불필요한 지원을 막기 위하여, 안 제 5조제2항은 조항의 문구를 법제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제15조(등급판정 등)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, 신청서, 의사소견서,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·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,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바. 기타재가급여 :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」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
□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」

제7조(등급판정기준 등)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기요양 1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2. 장기요양 2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3. 장기요양 3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4. 장기요양 4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5. 장기요양 5등급 : 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6.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: 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
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

□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

제2조(급여방식 및 급여품목) ① 복지용구 급여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(이하 "복지용구사업소"라 한다)에 의하여 제공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. 성인용 보행기

제4조(복지용구 급여기준)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·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.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